

## 영국의 통합 물 관리에 관한 법제 고찰

정보신청기관 :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I. 여는 글

인류의 문명 발달사에서 물의 관리는 통치자들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였다. 고대 중국 황제의 가장 큰 임무 중의 하나가 황하 유역의 홍수를 다스리는 것이었으며, 고대 로마 역시 제국 내 곳곳에 수도교를 건설하여 로마인들에게 안정적인 용수를 제공하였다. 문명이 고도화된 오늘날 역시 물 관리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욱이 최근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예측하기 힘든 홍수 혹은 가뭄 등의 자연재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물 관리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교적 용수관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선진국도 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예외가 아니다. 올해 영국 정부는 올림픽이라는 큰 국가행사를 앞두고 계속된 일련의 가뭄과 홍수로 인해 대회 운영에 차질을 빚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였다. 영국은 연중 강우 분포가 고른 편이지만,

2012년 연초부터 지난 6월까지 이어진 이상 가뭄은 물 부족 사태를 일으켜 각 가정의 정원 관리를 위한 물 사용을 금지시키기도 했을 정도다.

물론 영국이 주요 선진국들 중에 수자원 관리에 독보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국가라고 할 수는 없다. 철도 및 전기와 같이 영국은 상하수도 운영에 민영화 시스템을 전격 도입하였다. 이에 지역 단위의 민영화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요금 상승 등으로 영국 국민들 사이에서 부정적 의견 및 불신이 확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영국은 유역 단위의 민영화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유역을 맡고 있는 민영회사의 독점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즉, 전기나 가스의 경우에는 한 지역에 다수의 민영회사가 경쟁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지만, 물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영국 정부는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규제기구로 수자원국(Ofwat: Office of Water Services)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자원 관리 및 운영을 환경부, 지식경제부, 수자원 공사가 나누어서 하고 있다. 관리부처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작성한 “OECD 환경 전망 2050”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회원국 중 물 스트레스<sup>1)</sup>가 가장 높은(40%) 국가로 평가되었다.<sup>2)</sup> 비록 영국이 수자원 운영에 있어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통합된 규제기구를 통한 운영은 충분히 참조할 만하다고 여겨진다. 이에 본 글은 영국의 수자원 운영에 관한 법령을 검토해보고, 그에 근거한 수자원 운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II. 영국 수자원 관련 법령

영국 정부는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이미 상하수도를 관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자원의 관리를 위한 법령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1963년에 이르러서야 중앙정부가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 및 이용을 위해 수자원 법(Water Resources Act 1963)을 마련해서 최초로 수자원의 이용 및 저장 및 토양 배수시설, 낚시 및 오락 시설 등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 1. 수자원법(Water Resources Act, 1963)

1963년에 제정된 수자원법은 수자원을 관리, 감독하는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수자원과 관련하여 지방 정부의 하천 감독권(River Authorities) 정립 및 의무(Part 2), 물 취수 및 저장 통제(Control of Abstraction and Impounding of Water)(Part 3), 토지, 공업과 관련된 강 감독권의 권한(Powers of River Authorities in Relation To Land and Works)(Part 4) 이외에 수자원 관리에 따른 재정 관리 및 강 위원회(River Boards)의 역할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다.

### 2. 수(水)법(Water Act 1973와 Water Act 1983)

1963년에 제정된 수자원법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수자원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역할과 권한을 명시한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권역별로 효율적인 수자원의 활용을 위해 1973년 수(水)법(Water Act, 1973)을 제정하였다. 이로써 상하수도를 관리하는 10개 권역의 구분 및 감독권이 확립되었다. 다만 이는 각 권역을 담당하도록 법률로서, 지정된 상하수도 사업자들은



- 1) 물 스트레스: 이용 가능 수자원 중 물 사용량이 차지하는 비율.
- 2) 녹색성장위원회, “OECD 환경전망 2050 물 챕터 발간” (2012년 3월 8일), <http://www.greengrowth.go.kr/?p=49262> (접속 2012년 9월 20일).

지방정부와 공조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었다. 그러나 1989년에 개정된 Water Act로 인해 상하수도를 담당하던 사업자들이 민영화가 되자, 민영화로서 관리하기 어려운 국가 주요 하천을 담당하기 위해 기존의 지방의 하천감독권이 중앙정부로 이관하게 되었다(National Rivers Authority: NRA가 담당). 그리고 NRA는 환경법 (Environment Act, 1995)에 의해 환경청(Environment Agency)에 소속시켰다.

### 3. 수자원법(Water Resource Act, 1991)

민영화 조치와 국가 주요 하천의 국가 관리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수자원법(Water Resource Act 1963)에 대한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환경 관련 내용을 대폭 보강하는 내용이 보강되어 공표되었다. 1991년에 개정된 수자원법(Water Resources Act, 1991)의 주요 내용은 첫째, 수자원 관리에 있어 환경청(Environmental Agency)의 관리 권한을 대폭 강화시켰다. 개정된 법의 Part 2에서는 환경청의 수자원 관리(Water Resources Management)의 역할로서 물 관련 기업 및 관련 기관의 수자원 이용 및 저장을 감독하고 이에 대한 면허증 발급을 책임지도록 한다. 아울러 가뭄에 대비하여 환경청의 역할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또한 수자원의 오염 관리(Control of Pollution of Water Resources)와 홍수 대비 위원회의 설립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각각 Part 3과 Part 4에 추가하였다.

둘째, 1991년에 개정된 수자원법은 지방정부 소유가 아닌 국가 관리 하천을 관리하기 위한 국가 하천 감독기구(National Rivers Authority)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하였다(Part 1). 특히 Part 1에는 위원회의 설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다. 그 밖에 Part 5에는 하천의 낚시 관리 규정이 추가로 담겨 있다.

한편, 본 법의 보충적인 법령으로 2003년과 2006년에 수자원 규정(Water Resources Regulations SI 2003/164와 2006/641)이 제정되었다. 전자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이루어지는 관개 사업을 포함하는 24시간 농업용수 관리 규정이다. 이 규정에 의하면, 법적으로 물 20입방미터(Cubic meter)당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후자는 물의 이용과 저장에 관한 면허증 신청 방법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밖에 면허증 교부에 대한 거부, 거부에 대한 이의제기,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및 압수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 4. Water Act 2003(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적용)

전술한 바와 같이, 영국은 상하수도를 일찍이 민영화한 관계로 효율적인 수자원 이용과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존의 1991년의 수자원법(Water Resources Act, 1991)에 대한 검토를 다시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웨일즈 의회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아 잉글랜드 및 웨일즈 지역에 발효되는 새 법령을 국무장관이 공

표하였다. 이 법령의 목적은 오염을 통제하여 지속 가능한 수자원의 이용, 소비자 의견의 수용, 규칙을 준수하는 (민간 사업자 사이의) 경쟁 및 수자원의 절약을 위한 법조문 제공에 있다. 본 법에 추가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물 서비스 규제청(Office of the Water Services Regulation Authority: Ofwat)에 의해 상하수도 사업자들의 직책 및 경제적인 규제, 라이선스를 가진 물 공급자 관리
- 물 공급 및 하수 처리 권한, 사업자 및 공급자들의 의무
- 물 사업자들, 라이선스를 가진 물 공급자들의 식수 품질 및 환경식량농업부(Defra)와 음용수 감시과(the Drinking Water Inspectorate)의 의무 강화
- 물 서비스 규제청에 의해 물 사업자들의 직책에 따른 책임 및 물세 통제
- 물 서비스 규제청과 소비자 위원회에 의해 소비자 및 수급자 보호
- 민간 사업자의 소매 및 수송 경쟁(retail and common carriage competition)

이 밖에 본 법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을 살펴보면, Part 1은 수자원의 이용과 저장(Abstraction and Impounding)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 법령에 근거하여 취수와 저장에 관련하여 두 가지 형태의 면허증 - 임시면허증(the temporary licence)과 전환 면허증(the transfer licence) - 을 추가로 신설하여 발급하게 되었다(Section 21-23). 기존에는 오직 Full Licence만을 발급하여 기한에 관계없이 면허를 소유한 기업 등이 취

수를 담당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새 법령에 의거, 임시 면허증 소지 기업 및 기관은 28일을 넘지 않는 기간만 규정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전환 면허증의 경우에는 임시 면허증처럼 28일간만 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면허증 소유기간 중 관련 하천의 이용에 있어 음용의 목적에서 운항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Part 2에는 물 서비스에 관한 새로운 관리 조직의 설립에 관한 내용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물 서비스 규제국(Ofwat)에 관한 내용(Section 34)이 담겨 있으며, Section 35에는 소비자들의 권익과 의견을 얻기 위해 설립된 소비자 위원회(Consumer Council for Water)의 역할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Part 3에서는 기후 및 환경 관련 내용으로 채워졌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토지 배수와 홍수 대비와 관련된 조항(Section 66~ 69)
- 하천 관리에 있어 환경청(EA)의 역할 확대(Section 71)
- 석탄 사업 수질 처리와 관련하여 석탄 감시청 역할(Section 85)
- 수질 오염과 관련된 오염된 토지와 관련 조항(Section 86)

한편, 상하수도 사업자들은 본 법 이외에 다른 관련법 및 환경청에서 규정한 EC 환경지침서(EC Environmental Directives)도 준수해야 한다. 이 지침서는 쓰레기, 토양 오염, 개발 제한, 청

정도, 홍수 대비, 낚시 및 오락시설 등 수자원 이용에 있어 환경과 관련된 지침을 담고 있다. 아울러 사업자들은 EC가 정한 Water Framework Directive 200/60의 'River Basin Management Plans'에 의거해 수자원의 질과 양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Ⅲ. 영국의 물 관리 기구<sup>3)</sup>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하수도의 권역별 민영화, 주요 하천의 국가 관리 등으로 인해 관련 단체들이 많은 편이다. 주요 조직만 살펴봐도 환경, 식품, 농림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 산하의 중앙 환경청(EA)과 8개의 지방 환경청(Local EA)이 있으며, 이 밖에 물 서비스 규제부(Ofwat)와 음용수 감시과(The Drinking Water Inspectorate: DWI) 및 식수 소비자위원회(Consumer Council for Water) 등이 있다.

또한 9개의 상하수도 사업자, 11개 물 전용 사업자(Water only companies) 및 7개의 물 공급자 격자(Water Supply Licensees) 등이 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위와 같이 마련된 법령, 특히 수(水) 법(Water Act 2003)에 근거해서 중앙정부의 환경청 주도의 통합적인 수자원 관리시스템을 수립하고 운용하고 있다. 주요 기관에 대해서 알아 보면 다음과 같다.

#### 1. 환경, 식품, 농림부(Defra)

Defra는 영국 수자원 관리의 컨트롤 타워인 환경청의 상위 기관으로서 환경청의 업무에 책임을 지는 곳이다. Defra는 직접적으로 수자원 관리 감독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는다.

첫째, 의무보고서(a Statement of Obligations)를 발행하여, 물 사업자와 단속기관들이 법령에 근거한 정부 지침을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복잡한 법령의 해석을 통해 감독기관 및 피감기관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자원 이용에 관한 미래 전략을 검토하며, 감독기관인 Ofwat에 대한 사회환경지침서(Social and Environmental Guidance)발행하여 개선된 사회환경정책에 대한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이 지침서 발간은 의회와 협의하여 법적 검토를 받는다.

#### 2. 환경청(The Environment Agency)

이는 식수, 취수와 방출이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환경청의 역할과 기능은 환경법(The Environment Act 1995)에서 찾을 수 있다. 환경청은 국가하천감독(National Rivers Authority), 국가의 오염검사관(Her Majesties Inspectorate of Pollution)과 지역 폐기물 기관들(Local Waste Author-



3) Defra, *Future Water, The Government's Water Strategy for England* (London, 2008), pp. 83~86.

ities)의 합병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다. 적어도 8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중 3명은 장관의 지명을 받아야 하며, 나머지는 국무장관에 의해서 선출된다.

Part I에는 환경청과 스코틀랜드 환경보호청(the Environment Agency and the Scottish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역할 및 타 위원회<sup>4)</sup>들의 법인설립 조항이 있다. 이 외에 수자원 관리에 필요한 위원회 및 청(Agency)을 신설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기능, 권리, 책임을 부여한다.

환경청이 환경법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이는 수자원법(the Water Resources Act 1991), 토지수시설법(The Land Drainage Act 1991)에 의해서도 적용받는다.

첫째, 잉글랜드와 웨일즈 홍수 대비(Flood Defence) 관리는 환경청이 본 법 section 6(4)에 의해 홍수와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있다. 또한 이는 홍수 대비 기능을 하는 지역 홍수대비위원회(Regional Flood Defence Committees: RFDCs)와 공조하고 있다. 둘째, 어장(Fishery)과 관련된 권한은 본 법 section 6(6~7)에 근거하고 있다. 국영 및 지방 낚시면허증(national and regional fishing licences)의 책임에 대한 조항은 연어와 민물어장법(Salmon and

Freshwater Fisheries Act 1975), 수자원법(the Water Resources Act 1991)과 본 법 Part V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 외에 운항(Navigation)<sup>5)</sup>, 긴급 오염비용 회수(Pollution incident cost recovery)<sup>6)</sup>와 함께, Part II에는 환경청이 잉글랜드, 웨일즈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에 노출된 오염된 토지와 버려진 광산(Contaminated Land and Abandoned Mines)(Section 57 ~ 60<sup>7)</sup>)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조항이 있다.

#### 환경청의 홍수 관리를 위한 새로운 기후 변화 프로젝트인 Thames Estuary 2100<sup>8)</sup>

본 프로젝트는 영국의 가장 중요한 동해안 어귀 공사 중에 하나이다. 이 지역이 영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 재산, 중요 정부 시설 등이 모여 있어 각별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 앞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위험 요소를 줄이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는 환경청이 맡고 있다. 마지막 계획으로는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따른 홍수 위험 관리 측정을 통해 공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장기적인 전략으로, 앞으로 수자원의 관리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겠다.



- 4) Advisory (Regional and Fishery) & Food defence Committee (Section 11~19).
- 5) The Environment Act 1995 Section 43.
- 6) The Water Resources Act, 1991 Section 161.
- 7) The Water Resources Act 1991 Section 86 & 161 개정.
- 8) Defra, Op.cit., p. 64.

### 3. 물 서비스 관리국(Ofwat: Office of Water Service)

영국 정부 산하 물 서비스 감독기관이지만, 사업자에 대한 경제적인 규제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공급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규제 역할을 한다. 예컨대, 물 기업들이 지정가격(price limits)으로 고객들에게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정부의 독립적인 규제기관으로 정책결정 과정의 유지와 위험요소를 줄이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Ofwat이 다른 규제 장치들과 함께 국가 수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정부와 관련 사업자들이 협력을 통해 협력할 수 있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따라서 Ofwat은 규제라는 법적 의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 4. 음용수 감시과(The Drinking Water Inspectorate)

음용수 관리과는 물 기업들이 공급자들에게 제공하는 음용수가 안전하고 허용될 수 있는지를 단속하는 역할을 한다. 공급자들이 물 공급자를 선뜻 선택하지 않거나 공급자들 사이에서 수질을 실제로 비교하려고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9) Defra, Ibid., p. 88.

### 5. 소비자위원회(CCWater: Consumer Council for Water)

소비자는 정책 제정에 있어 핵심이며, 그들의 이익 창출이 정부가 추구하는 우선순위이다. 이런 이유로 2005년 법령에 의해 소비자 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소비자는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표자로 등극했다. 정부는 소비자 대표단이 상하수도 서비스와 관련하여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상의하고 있다.

### 6. 서비스 기준 보증(GSS: Guaranteed Service Standards)

소비자는 상하수도 기업들로부터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최소한 배달 서비스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고객 불만 해소 및 수도 공급 차단 및 요금 지불 등의 기준이 맞지 않을 때에도 무조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 7. 물 사업자(Water Company)<sup>9)</sup>

Ofwat은 효율성 향상과 고객의 이익을 위해 물 사업자들의 비용 투명성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Defra는 Ofwat의 감시 권리를 준수하며 자발적으로 기업의 일부를 해체 병합을 유도하는 등 경제적 관점에서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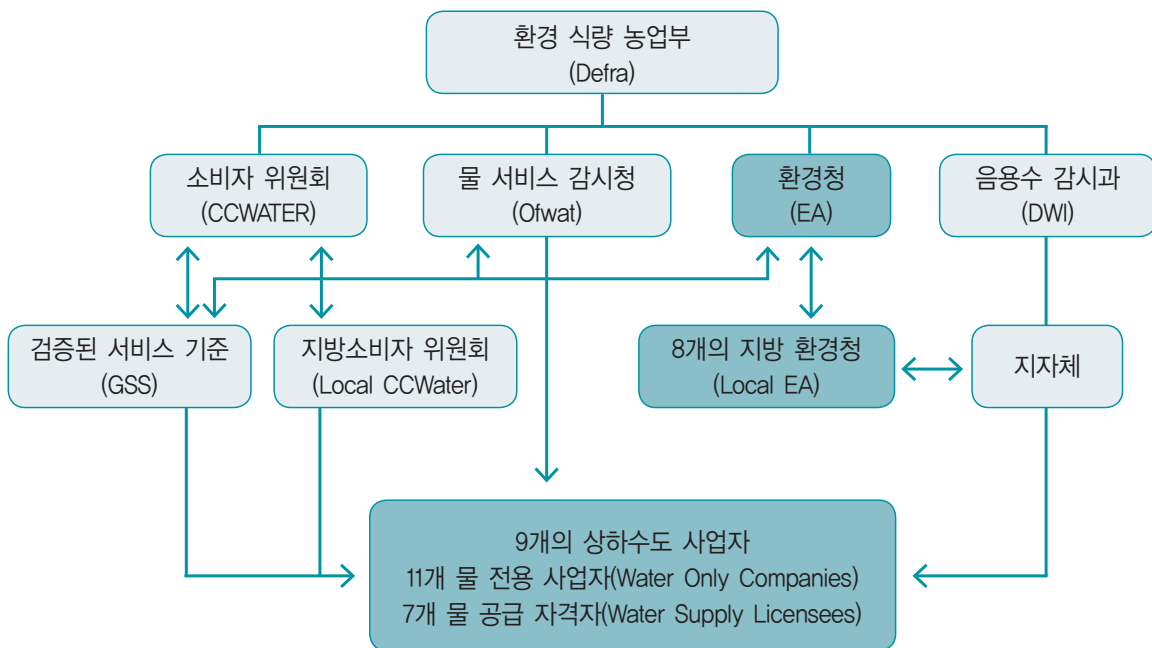
록 유도하고 있다.

Ofwat 활동에 대응하여, Defra는 물 회사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심각한 재정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에 긴급 상황을 처리할 준비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물 사업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에서, Defra 주도로 현재 특별 관리 및 회사 기능(Rules for Special Administration)을 유지하기 위해 기금을 얻기 위한 절차에

대한 규칙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행정체제는 마지막 보루의 절차이며, 소비자들에게 상하수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다른 법령 및 파산업무와 조정을 하여 물산업법(the Water Industry Act 1991)의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영국의 수자원 관리는 큰 틀에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영국(England and Wales)의 수자원 관리 및 운영



환경청을 포함하여 위에 진하게 표시된 기관 및 조직은 직접적으로 수자원을 관리하는 곳이다. 환경청이 컨트롤 센터로서 지방 환경청 및 실제 물 사업자들의 수자원 운용을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반면, 흐리게 표시된 기관은 Defra를 제외하고는 수자원 운용의 감시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한편 위에 보는 바와 같이 Defra가 수자원 관리 시스템의 가장 상위에 있으며, 그 아래에 물서비스감시청(Ofwat), 환경청(Environment Agency), 음용수 감시과(the Drinking Water Inspectorate) 및 소비자위원회(CCWATER)가 있다. 이들은 모두 물 사업자로부터 정보제공을 요구하며, 이를 검토하는 한편 반드시 서로 협력해야 한다.



규제기관의 관련 정보는 Ofwat에서 수집되어, 물 사업자들이 규제에 있어 이중으로 부담을 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영국 물 관리를 위한 Defra의 장기 전략  
“Better Regulation”<sup>10)</sup>**

수(水)법(Water Act, 2003)은 규제 제도를 개선시키기 위해 다양한 장치들을 도입하였다. 또한 Defra는 물 사업자들이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지 않게 하기 위해 소비자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계획을 수립해 왔다. 특히 수자원 관리에 있어 가장 상위조직인 Defra는 2010년까지 영국의 민간기업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해 왔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정부가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 25% 목표치<sup>11)</sup>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 법률의 재고 및 시장 기반의 장비와 적절한 곳에서의 자발적인 활동을 늘리는 것을 권장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최신식의 환경허가증 시스템(Environmental Permitting system)<sup>12)</sup>을 확장하도록 했다.

**IV. 나가는 글**

전술한 바와 같이 영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연중 강우가 고르고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가 드문 편이다. 그러나 잉글랜드 지역은 산지가 적고 대규모의 하천이 없는 편이어서 홍수와 가뭄에 취약한 것 역시 사실이다. 2012년 상반기에 경험한 잉글랜드 지역의 가뭄과 홍수는 치수(治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영국 정부의 고민과 수자원 관리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영국은 상하수도의 민영화를 이룬 시기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의 관리와 운영을 통합적으로 실시하여 민영화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 왔다. 이런 점에서 영국의 통합 물 관리 시스템은 우리나라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은 환경, 식량, 농업부(Defra)가 수자원 관리의 가장 상위 기관으로서 수자원 관리의 전략을 수립하며, 산하의 환경청(중앙 및 지방)이 민간 물 사업자들과 실질적인 수자원의 관리 및 운영을 맡고 있다. 환경청과 민간사업자들의 관리를 감시하는 다양한 기구(소비자 위원회(CCWater), 물 서비스 감시청(Ofwat) 및 음용수 감시과(DWI))를 두고 있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권익을 반영하는 기구(소비자 위원회)가 수자원 관리 시스템의 주요 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비록 영국의 물관리 운영시스템을 우리나라에



10) Defra, Ibid., pp. 87~88.

11) [www.defra.gov.uk/corporate/regulat/simplify/index.htm](http://www.defra.gov.uk/corporate/regulat/simplify/index.htm).

12) 올해 4월부터 Permitting systems for water. Waste Management Licensing an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permitting가 대체되었다.

전격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양국 사이에 지리적 이고 기후적인 배경에서 큰 차이가 있어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통합적인 수자원 관리시스템은 관리주체가 나뉘어져 있어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가 되지 않는 우리

나라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양 건 회**

(해외입법조사원, University of Bristol)

**참고문헌**

**문헌**

- Defra, "Future Water : The Government's Water Strategy for England, February 2008.

**웹사이트**

- 녹색성장위원회(<http://www.greengrowth.go.kr/?p=49262>).
- 영국 환경, 식품, 농림부(<http://www.defra.gov.uk/corporate/regulat/simplify/index.htm>).